

계룡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194 호
의결년월일	2005. 5. . (제 15 회)

제출일자	2005. 4. .
제 출 자	계 룡 시 장

1. 개정이유

- 『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·정원보강지침』과 『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정원보강지침』에 따라 본청기구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시민봉사와 소속으로 과표담당을 신설하고, 주택가격 조사·산정 및 결정·공시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장사무를 정함(안 제3조).
-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업무를 총무과장 소관으로 하여 분장사무를 정함(안 제3조).

3. 입법예고 : 의견제출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전담기구 및 인력보강 지침(행정자치부)

① 지자체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·정원보강 지침

-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에 따라, 주택을 “토지+건물”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를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조사, 산정 및 결정, 고시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·인력 보강 필요.

○ 수행기능

-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
- 전산입력 시가산정
- 개별주택가격 결정, 고시 및 개별통지
- 이의신청 접수 및 재산정 등

○ 기구 및 정원규모

- 담당급 전담기구 설치(명칭 : 과표담당)
- 정원 : 3명(6급1, 7급1, 9급1)
- 직렬 : 세무직렬 책정 원칙

②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지자체 정원 보강지침

- 특별법에 의거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, 시도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보강

○ 인력보강 : 실무인력 7급이하 1명 보강(직렬 자율책정)

○ 수행부서 : 총무과

○ 존속기한 : 2006.12.31

나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2조(행정기구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
(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)

다. 참고자료

- 신·구조문대비표

계룡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계룡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총무과장 분장사무중 후단 “러”목 다음에 “며.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업무에 관한 사항”을 삽입함.

제3조제2항제3호 시민봉사과장 분장사무중 후단 “하”목 다음에 “거. 주택가격 조사·산정 및 결정·고시업무에 관한사항”을 삽입함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(발 취)

□ 지방자치법

제102조 (행정기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시·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1994.3.16, 1994.12.20>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0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 및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·국 또는 실·과·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·군·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·국 또는 실·과·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③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 본청의 실·과·담당관의 정수의 일부를 관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.

④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 및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⑤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⑥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참 고 자 료

【신 · 구조문 대비표】

현 행	개 정
제3조 (실·과의 설치) ① (생략) ②실·과장의 분장사무의 대장은 다음과 같다. 1. 기획감사실 가.~머. (생략) 2. 총무과장 가.~러.(생략) 머.<신 설> 3. 시민봉사과장 가.~하.(생략) 거.<신 설>	제3조 (실·과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실·과장의 분장사무의 대장은 다음과 같다. 1. 기획감사실 가.~머. (현행과 같음) 2. 총무과장 가.~러.(현행과 같음) 머. <u>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업무에 관 한 사항</u> 3. 시민봉사과장 가.~하.(생략) 거. <u>주택가격 조사·산정 및 결정·고시업무 에 관한사항</u>